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 서울시복지재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

의안 번호	359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년 3월 30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공유재산인 서울잇다플레이스 건물 전체를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서울시복지재단이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에 따라 사용료 면제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공유재산(서울잇다플레이스) 현황

- 주소: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723
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 제218동 제2층
제공공청사1호(성동구 왕십리로 135)
- 규모: 지상 2층(건축연면적 2,422.75㎡, 전용면적 948.3695㎡)
- 재산관리관: 고독대응과장

나. (서울시복지재단) 공유재산 사용 개요

- 허가기간 : '26. 4. 13.~'31. 4. 12. (5년)
- 무상사용기간 : '26. 5. 13.~'31. 4. 12. (4년 11개월)
- 예상감면액 : 총 3,350백만원
- 사용목적 : 공공·공공용 사용(서울잇다플레이스 조성 및 운영)

다.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필요성

- 市 출연기관이 비영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가능
 -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이며, 서울시복지재단이 서울잇다 플레이스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정관에 따른 목적사업(복지사업)으로서 비영리사업에 해당
 - 市 출연기관 비영리사업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시의회 동의 절차 이행할 경우 「공유재산법」 제24조 등에 따른 사용료 감면이 가능함
 - 조세 절감, 행정 및 회계 비효율 방지(개선)를 위해 사용료 감면 필요
 - 재단에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(징수)할 경우 사용료만큼의 복지실 세출(출연금) 증액이 필요하며, 사용료만큼 세입도 함께 증액되는 구조임
 - 조세 지출 절감*, 행정·회계 비효율 개선을 위해 재단 사용료 면제 추진 바람직
- * 불필요한 세입·세출의 상계(相計)가 지속됨에 따라 국세(부가가치세) 지출 부담 증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

나. 예산조치: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(임차료) 예산변경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- 시의회 동의(4.30.)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의(5.7.) 후 사용료 면제
- 절차상 시의회 동의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 순서는 무관하며, 동시 진행하여 매월 사용료(57백만원) 추가 예산편성을 방지하고자 함

※ 작성자 : 복지실 고독대응과 양운영 (☎ 2133-7164)